

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4년 3월 21일에 개최한 이사회(최초 이사회 2014년 2월 18일)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0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의 1차 발행가액과 (2)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blacksquare \text{ 1차 발행가액} = \frac{\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1 + (\text{증자비율} \times \text{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blacksquare \text{ 2차 발행가액} = \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

4.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4년 4월 24일

5.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20,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4,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 주 주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4월 24일 예정) 17: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22836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4) 일 반 공 모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후에 발생하는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 미달주식 전부에 대하여 인수 계약서에서 정하는 인수비율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합니다.

6.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7. 청약사무취급처 :

- (1) 우리사주조합 : 우리투자증권(주) 본, 지점
-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우리투자증권(주) 본, 지점
- (3)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식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우리투자증권(주) 본, 지점
- (4) 일반공모청약자 : 우리투자증권(주), 케이비투자증권, 대신증권(주), 대우증권(주), 엘아이지투자증권(주), 이트레이드증권(주),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의 본, 지점

8. 주식 청약기간 :

- (1) 우리사주조합 : 2014년 6월 2일
- (2) 구주주 : 2014년 6월 2일 ~ 2014년 6월 3일(2일간)
- (3) 일반공모 : 2014년 6월 9일 ~ 2014년 6월 10일(2일간)

9. 주금납입일 : 2014년 6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1월 1일

1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허용
-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
-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4년 5월 16일 ~ 2014년 5월 22일(5영업일간)
-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우리투자증권(주)

12. 기타

-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유가증권시장에 공시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sconst.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 (3)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 2014년 4월 24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4년 4월 25일부터 2014년 5월 2일



대표이사 사장 임 병 용

명의개서대리인 (주)국민은행
은 행 장 이 건 호